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2326호

2026. 6. 22.(월)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
전 화 : 02-2116-3414

차 례

공 고

- 제2026-11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

공 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1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복수직렬 정원 조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2116-3088, FAX :2116-4608, email : dbsgkh0730@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 및 규칙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르는 인력수요를 적정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6급 소계 : 333명 → 336명(증 3명)

- 행정·녹지 : 7명 → 8명(증 1명)

- 사회복지 : 24명 → 26명(증 2명)

2) 7급 소계 : 565명 → 577명(증 12명)

- 사회복지 : 125명 → 133명(증 8명)

- 녹지 : 10명 → 12명(증 2명)

- 간호 : 17명 → 19명(증 2명)

3) 8급 소계 : 513명 → 500명(감 13명)

- 사회복지 : 118명 → 110명(감 8명)

- 녹지 : 7명 → 4명(감 3명)

- 간호 : 56명 → 54명(감 2명)

4) 9급 소계 : 169명 → 167명(감 2명)

- 행정 : 65명 → 63명(감 2명)

- 행정·방재안전 : 0명 → 2명(증 2명)

- 사회복지 : 12명 → 10명(감 2명)

5) 7급 상당 소계

- 비서 : 본청 4명 → 3명(감 1명)
- 비서 : 구의회사무국 1명 → 2명(증 1명)

6) 8급 상당 소계

- 비서 : 본청 0명 → 1명(증 1명)
- 비서 : 구의회사무국 1명 → 0명(감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제외대상
- 2)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680	1,042	43	160	435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668	1,033	40	160	435
직급 직렬별	2급 소계	1	1	0	0	0
	이사관	1	1			
	4급 소계	10	8	1	1	0
	행정	5	4	1		
	행정·기술	4	4			
	기술	1			1	
	5급 소계	76	42	3	12	19
	행정	49	30	3		16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2			2	
	의무	8			8	
	의무·약무	1			1	
	시설	6	6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직급 직렬별	6급 소계	336	240	6	30	60
	행정	192	135	6	12	39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24	13			11
	행정·공업	2	2			
	행정·공업·보건·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녹지	8	8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수의·보건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시설	5	5			
	방호	0	0			
	세무	12	12			
	전산	1	1			
	사회복지	26	16			10
	공업	6	6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2	2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6			6	
	보건진료	2			2	
	시설	25	25			
	운전	3	3			
	사무운영(필기)	1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 직렬별	7급 소계	577	368	23	45	141
	행정	259	160	19	8	72
	행정·방재 안전	1	1			
	세무	33	33			
	전산	3	3			
	사회복지	133	63	1		69
	방호	4	4			
	공업	15	15			
	농업·수의	1			1	
	녹지	12	12			
	녹지·시설	1	1			
	보건	8	1		7	
	의료기술(임상병리)	4			4	
	의료기술(방사선)	2			2	
	약무·간호	3			3	
	간호	19			19	
	환경	2	2			
	시설	44	44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5	5			
	운전	18	18			
	전기운영(전기)	1		1		
	사무운영(필기)	6	3	2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 직렬별	8급 소계	500	262	3	58	177
	행정	221	136	1	11	73
	행정·시설	3	2	1		
	세무	19	19			
	전산	3	3			
	사회복지	110	25			85
	방호	5	4		1	
	숙기	1		1		
	공업	9	9			
	공업·시설	1	1			
	녹지	4	4			
	녹지·시설	2	2			
	보건	5			5	
	의료기술(임상병리)	1			1	
	의료기술(방사선)	1			1	
	의료기술(물리치료)	2			2	
	의료기술(치과위생)	2			2	
	간호	54	1		34	19
	환경	1	1			
	시설	27	27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6	6			
	운전	21	20		1	
	기계운영(기계)	0	0			
	사무운영(사서)	0	0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 직렬별	9급 소계	167	111	4	14	38
	행정	63	27	1	3	32
	행정·방재 안전	2	2			
	세무	11	11			
	전산	1	1			
	사회복지	10	5			5
	숙기	2		2		
	방호	1	1			
	공업	8	8			
	녹지	5	5			
	보건	6			6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환경	2	2			
	시설	27	27			
	방재 안전	1	1			
	방송통신	4	4			
	시설 관리	10	9			1
	운전	12	8	1	3	
	전문경력관 소계	1	1			
	나군 소계	1	1			
	화생 방관리원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별정직 계		11	8	3		
직급 직렬별	5급 상당 소계	2	2			
	비서	2	2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2	1	1		
	7급 상당 소계	5	3	2		
	비서	5	3	2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9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680	1,042	43	160	435	총 계	1,680	1,042	43	160	435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668	1,033	40	160	435	일반직 계	1,668	1,033	40	160	435
2급 소계	1	1				2급 소계	1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10	8	1	1		4급 소계	10	8	1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76	42	3	12	19	5급 소계	76	42	3	12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33	238	6	30	59	6급 소계	336	240	6	30	60
사회복지	24	15			9	사회복지	26	16			10
행정·녹지	7	7				행정·녹지	8	8			
7급 소계	565	362	23	43	137	7급 소계	577	368	23	45	141
사회복지	125	59	1		65	사회복지	133	63	1		69
녹지	10	10				녹지	12	12			
간호	17			17		간호	19			19	
8급 소계	513	270	3	60	180	8급 소계	500	262	3	58	177
사회복지	118	30			88	사회복지	110	25			85
녹지	7	7				녹지	4	4			
간호	56	1		36	19	간호	54	1		34	19
9급 소계	169	111	4	14	40	9급 소계	167	111	4	14	38
행정	65	29	1	3	32	행정	63	27	1	3	32
행정·방재안전	0	0				행정·방재안전	2	2			
사회복지	12	5			7	사회복지	10	5			5
전문경력관 소계	1	1				전문경력관 소계	1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정직 계	11	8	3			별정직 계	11	8	3		
7급 상당 소계	5	4	1			7급 상당 소계	5	3	2		
비서	5	4	1			비서	5	3	2		
8급 상당 소계	1	0	1			8급 상당 소계	1	1	0		
비서	1	0	1			비서	1	1	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렬·직급별 적정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하되,
- 2) 기준 단가는 2026년 인건비 예산편성액을 기초로 하고,
매년 봉급인상률 3%(2026년 기준)를 감안하여 추계함
- 3) 추계 대상은 아래와 같음

구분(명)	총 증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0	0	0	3	12	△13	△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 계
세입	보조금(a)						0
세출	인건비(b)	175,264	361,043	371,874	383,031	394,521	1,685,733
□비용(b-a)		175,264	361,043	371,874	383,031	394,521	1,685,733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장윤희(☎2116-3088)

<관계법령 발췌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제출기관 :

☐ 제 출 자 : (전화번호 기재)

현행규정	검 토 의 건	
	개선(안)	검토사유